

국제산업보건동향

일본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 제22회 전국작업환경측정·평가 추진운동 실시

(2008년 9월자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사)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작업환경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위하여 제22회 작업환경측정·평가 추진운동을 실시하였다.

• 일본의 전국작업환경측정·평가추진운동 실시배경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작업환경측정·평가의 실시 증진을 위해 작업환경측정협회에서 전국 작업환경측정·평가추진운동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2007년도에 법령개정에 따라 포름알데히드가 신규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되었으며 터널내의 분진농도 측정이 의무화되었으며, 2008년도 전국 노동위생주간의 실시와 함께 작업환경측정·평가추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작업환경관리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전국노동위생주간:

2008년 10월 1일~10월 7일

• 일본 작업환경측정협회는 작업환경측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의 관리 하에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

기사, 측정기관 및 자사측정사업장 3자가 모여 측정업무 개선, 작업환경측정기사의 평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작업환경측정·평가 추진운동 실시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간: 2008년 9월 1일~9월 30일

(준비기간: 2008년 6월 1일~ 8월 31일)

-표어: 제대로 측정, 확실히 평가, 결과를 살려 철저한 관리!

-주최자: 사단법인 일본 작업환경측정협회 본부 및 전국 13개 지부

-후원자: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실시자: 작업환경측정기관, 자사측정사업장 및 위탁측정사업장

• 작업환경측정협회에서는 포스터, 리플릿 등의 배포,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파악 및 실시를 권장할 예정이며, 기관지, 홍보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진장해예방규칙 등의 일

부 개정에 근거한 터널 내에서의 분진농도 측정 등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며, 노동 안전위생법 시행령,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근거한 포름알데히드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는** 분진장해예방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근거한 터널 내에서의 분진농도측정 등에 대한 숙지와 실시가 이루어지고,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근거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숙지·철저와 실제적인 적용 등을 실시한다.
- 법정 작업환경측정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으로는
 - 옥외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그 결과의 평가
 - 유해위험성평가의 일환으로 작업환경측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실시를 촉진하고, 위탁측정 사업장과 의견

교환으로 정기 측정을 정착하는 등 위탁 측정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평가 및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측정기기의 점검정비, 특히 상대농도계의 정비·교정의 정기적인 실시 및 시료채취 펌프 및 유량 교정 장치의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자사측정 사업장 및 위탁측정 사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결과에 근거하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위험유해성 표시·문서교부제도에 근거한 위험·유해성 표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기준 및 작업환경평가 기준 등의 개정 내용에 대한 숙지·철저 및 이에 근거한 작업환경관리 대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의 명확화(산업의, 위생관리자, 작업환경측정기사 등)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확립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http://www.jawe.or.jp>

〈영국 안전보건청HSE 홈페이지〉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질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개인, 사업주 부담, 사회전체비용으로 추산하여 잠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있어 재해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2001/2002년까지의 경제적 손실비용 수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손실비용 추산목적: 산재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손실비용을 추산하여 산업분야별, 직업군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01/2002년까지의 산업재해, 질병 및 직업병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재해, 질병 및 직

업병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HSE의 전략 및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질병		상해		계	
	1995/1996	2001/2001	1995/1996	2001/2001	1995/1996	2001/2001
수입 손실	2,560	4,020	1,180	2,370	3,730	6,390
인적 비용	3,680	5,700	2,670	4,480	6,340	10,180
병가 수당	-	960	-	310	-	1,270
상해외의 재해비용	-	-	-	-	780	4,310
복지관련손실비용	7,010	10,240	2,970	5,580	9,980	15,820
치료비용	230	970	70	320	300	1,280

〈단위: 10억 파운드〉

개인적 비용		5.9	9.4	3.3	6.3	10.1	14.7
사업주* 비용	상해	-	1.5	1.0	1.1	3.9	7.8
	비상해			1.4	5.3		
사회적 비용	상해	11.3	17.3	5.9	10.7	20.0	31.8
	비상해			1.4	5.3		
경제적 비용	상해	7.6	11.6	3.2	6.2	13.1	22.2
	비상해			1.4	5.3		

• 사업주 비용: 질병에 대한 비용지급, 보상보험료, 기타보험, 회사운영비, 고용비용, 상해로 인한 손실(장비, 제품, 자재), 상해이외의 사고발생비용, 산재보험운영비용 등

• 2008년 9월에 HSE는 2005/06년에 발생한 사업주 부담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출처〉 <http://www.hse.gov.uk>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